

기금관리 규정

2000. 1. 28.



대한근대5종연맹
KOREA MODERN PENTATHLON FEDERATION

기금관리 규정

2026. 3. 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8장(재산 및 회계)에 의거 본 연맹이 설치, 운영하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기금’이라 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금특별회계로 편입한 재산을 말한다.
- ② ‘기금출납담당이사’ (또는 ‘사무처장’)라 함은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이사 또는 사무처장을 말한다.
- ③ ‘기금출납원’이라 함은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이외의 자가 출연(기부를 포함한다)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6. 정관 제4조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개정 2026. 3. 5.>
 7. 기타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기금결산 이월액 등의 여유자금
- ② 제1항의 재원을 기금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본 연맹이 관리 주체가 되는 근대5종 수익사업에의 투자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단, 기금의 대부분이 현금, 유가증권등 일 경우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현금 회계방식으로 계리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 연맹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④ 기금의 정확성을 기하고 기금계리의 부적정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기금으로 편입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원금은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 3. 5.>

② 본 연맹 재정자립을 위하여 기금원금 50억원 미만일 경우 집행을 자제한다. 단 연맹 운영상 불가피 할 경우 이사회, 총회 승인을 득한후에 기금 과실금에 한하여 목적사업과 일반기관 운영 비로 사용할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 이내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의 회계직원) ① 회장은 이사 (또는 ‘사무처장’)중에서 기금출납담당 이사(또는 ‘사무처장’)를, 사무처 경리직원 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직원은 회계직 임명과 동시에 보증보험회사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보험료는 본 연맹에서 부담한다.

제8조(결산서 작성등)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다만, 제4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현금회계 방식으로 계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한 서류
4. 본 연맹 회계감사의 감사의견서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본 연맹 결산서의 일부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제6조에 의한 기금운영계획과 제 8 조의 기금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3. 5.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